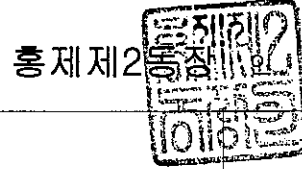


공고 제 2 호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05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천	최 *천 1966-06-09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(홍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2-27
유 *명	유 *명 1979-01-13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6가길 (홍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2-27